

## 비료수입업자 보증표([ ]보통비료, [ ]부산물비료)

(앞쪽)

1. 신고번호:
2. 비료의 종류 및 명칭:
3. 실중량 또는 실용량:
4. 보증성분량:
5. 원료명 및 투입비율:
6. 수입연월일:
7. 유통기간 :
8.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(자):
9. 사용상·보관상의  
주의사항:

비료수입업자

주 소:

전화번호:

성명 또는 명칭:

(서명 또는 인)

## 보증표 작성방법

1. <비료수입업자 보증표>의 표기는 한글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, 보증표는 포장 또는 용기의 뒤쪽에 전체 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.
2. <비료수입업자 보증표>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하여야 하며, 표시사항 중 일부를 스티커, 필기도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 또는 적어서는 안 된다.
3. 표시사항 중 제1호, 제2호, 제4호, 제5호 및 비료수입업자 주소, 성명 또는 명칭은 해당 비료수입업 신고증에 적힌 사항을 적어야 하며, 업체의 전화번호도 적어야 한다. 또한 제6호, 제7호 및 제8호는 포장 또는 용기의 여백에 별도로 표기 할 수 있으며, 별도로 표기하려면 별도 표기 위치를 적어야 한다.
4. 제3호의 “실중량 또는 실용량” 란에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담긴 비료의 중량 또는 용량을 적어야 하며, 계량 단위는 SI로 표기할 수 있다. 또한 실용량을 적을 때에는 가비중을 함께 적어야 한다.
5. 제5호의 “원료명 및 투입비율” 란에는 보통비료(유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) 및 부산물비료의 원료명과 그 투입비율을 적어야 한다.
6. 제6호의 “수입연월일” 란에는 해당 비료를 통관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.
7. 제7호의 “유통기간” 란에는 공정규격에서 유통기간을 표기하도록 정한 비료에 대하여 적어야 한다.
8. 제8호의 “생산국가 및 생산업체(자)” 란에는 해당비료의 원 생산국가 및 원 생산업체(자)를 적어야 하며 영문으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
9. 제9호의 “사용상·보관상 주의사항” 란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·보관하는데 필요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한다.